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지침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전부개정 2010.12.22. 지침 제121호

개정 2013.09.30. 지침 제166호

개정 2016.05.04. 지침 제203호

개정 2019.03.04. 지침 제265호

개정 2021.03.16. 지침 제327호

개정 2022.05.27. 지침 제366호

개정 2023.04.14. 지침 제396호

개정 2023.12.18. 지침 제412호

(상임이사·지원·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 소송사무의 적정한 처리 및 자문변호사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4., 2023.12.18.>

1. “소송” 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당사자(참가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행정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비송사건과 임직원이 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을 말한다.
2. “주관부서” 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법규·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속한 실을 말한다.
3. “소관부서” 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해당 제규정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가 속한 실(단 또는 센터 등) 및 **본부**를 말한다.
4. “부서장” 이라 함은 위 주관부서 또는 소관부서를 지휘·감독하는 실장(단장 또는 센터장 등) 및 **본부장**을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주관 등) ① 소송업무는 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6.5.4.>

②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및 기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주관부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소송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원처분을 하였거나 소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4조(증거확보) 소관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부서장의 임무)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소송사무에 대한 조사, 통계, 연구, 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교육
3. 소송통계의 작성, 유지
4. 소송사무의 보고
5. 그 밖의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소송사건의 처리

제6조(소송사건의 접수) ① 문서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접수된 소장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소장사본을 소관부서장에게 접수통보하고,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소송 발생경위, 처분사유 및 관련 자료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민사소송의 수행) ① 주관부서장은 민사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인 등기부에 법률상 대리인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로 지정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로 지정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27.]

제6조의3(행정소송의 수행) ① 주관부서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로 지정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로 지정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행정소송이 접수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수행 중인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관부서 등에 소송과 관련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일 유형의 사건으로서 반복하여 패소한 선례가 있는 경우
2.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로 패소가 확실 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소송 유지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소관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서면(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2.5.27.]

제6조의4(소의 취하 등)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취하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소송 취하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2. 항고심에서 소송을 취하할 경우

③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제6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
2.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동의한 경우

[본조신설 2022.5.27.]

제7조(응소 및 제소여부의 결정 등) ① 주관부서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응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멸시효, 소송실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소여부를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소 또는 제소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계획을 수립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① 주관부서장이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소 또는 제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주관부서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촉탁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의 경우 담당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징계내역 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선임일 기준 5년 이내에 징계전력이 없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6.5.4. 2023.4.14.>

1. 요양급여의 기준이 되는 법령, 행정규칙, 고시, 행정해석, 공개된 심사사례 등(이하 '기준등'이라 함)의 당부를 직접 다투거나, 직접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의 승패에 따라 기준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 장기간 반복되거나 확립된 심사방법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3. 의약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첨예한 갈등이 표출된 사안이거나,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회적 갈등에 관한 소송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경우
5.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첨예한 법리대립이 예상되는 경우
6. 소송수행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건강보험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집중적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 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1. 심급별 소송 수임료(착수금 및 승소사례금)가 2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공개모집에서 적정한 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⑤ 주관부서장은 전년도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수임건수가 총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의 50%이상을 선임한 변호사(정부법무공단 제외)와는 향후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선정을 제한한다. 다만, 전년도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수임건수가 1건인 경우 및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수 개의 소송이 제기되어 동일한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4.>

⑥ 제3항에 따라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이 정하는 ‘보수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심사평가원과 수임변호사 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경중,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4., 2021.3.16., 2023.4.14.>

⑦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의 경중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통상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례금의 액수, 지급 사유 및 지급 시기는 위임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4.> <개정 2023.4.14.>

제8조의2(공개모집 방법)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공고기간은 소송대리인 모집 인원 및 절차 등을 감안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대리인 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 모집에 부치는 사항
2. 소송대리인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소송대리인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소송대리인 선임기간에 관한 사항
5. 공모일정에 관한 사항
6. 공모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7. 공모 무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사평가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4.14.]

[중전 제8조의2는 제8조의5로 이동 <2023.4.14.>]

제8조의3(소송대리인 선임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심사평가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변호사
2. 심사평가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퇴직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3. 소제기일 당시 심사평가원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14.]

제8조의4(소송대리인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원장은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에 의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공직유관단체에서 감사 또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판사·검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심사위원회는 공모절차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최고 득점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며, 소송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할 시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4.]

제8조의5(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외부 변호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② 주관부서장은 외부 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3.4.14.>]

제9조(소송비용의 지급 및 정산) <삭제 2022.5.27.>

제10조(장부의 비치 및 보고) ① 주관부서장은 소장(신청서를 포함한다)이 접수되거나 제소 또는 응소하는 때에는 그 사실, 진행상황 및 종결사항 등의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건접수(응소) 및 처리현황부」에 작성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4.>

② 주관부서장은 행정소송사건의 응소(소장접수를 포함한다), 제소 및 종결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로 관할 검찰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행정소송사건의 매 변론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를 관할 검찰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출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응소, 제소 및 종결 시에는 그 처리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문변호사의 운용

제11조(자문변호사의 운용 등)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의 사업이나 업무에 관하여 외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9.3.4.>

② 원장은 효율적인 자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외부 변호사를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자문료 지급 등의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 「계약사무처리지침」(이하 “계약사무처리지침“ 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2021.3.16., 2023.4.14.>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변호사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8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의5를 준용하되, “소송대리인”은 “자문변호사”로, “선임”은 “위촉”으로 본다. <개정 2013.9.30., 2019.3.4., 2023.4.14.>

④ 제2항에 따른 외부 변호사 위촉과 관련한 공개모집 절차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16.> <개정 2023.4.14.>

⑤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제11조의2(위촉해제 등) ① 원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범죄행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상 알게 된 심사평가원의 비밀을 유출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자문변호사는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심사평가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고문·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자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이 해당 법률자문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③ 자문변호사가 위촉기간의 만료로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실적, 성실도 및 업무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3.9.30.]

제12조(자문사항) 원장은 외부 자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민사소송·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자문의뢰)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의 사실관계, 관계 법규, 질의사항 및 소관부서장의 실무적 의견과 반대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의뢰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자문요청 사안에 대해 제8조제3항 각 호 해당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자문 의뢰 필요성을 판단하고, 자문을 직접 처리하거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자문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 외의_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변호사 등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사안의 특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연간 의뢰·처리건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계약사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접 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계약사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문 처리기간은 자문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소관부서와 외부 자문변호사 간 사전협의를 있는 경우 14일)로 하되, 주관부서장과 자문변호사가 협의(직접 처리 시 주관부서장이 판단)하여 7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1. 소관부서의 자문 의뢰 내용이 부정확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소관부서에서 자문 중지를 요청한 경우

3. 처리기간 중 기준등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주관부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19.3.4.]

제4장 판결의 처리

제14조(상소 여부 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해당 심급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가 여럿일 경우에는 사안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의 의견만 듣고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소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행정소송사건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상소(제기·포기)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5.4.]

제14조의2(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① 주관부서장은 상소 제기기간 도과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관부서장에게 판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확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판결에 따른 조치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5.4.]

제14조의3(제도·업무개선 검토 요청 등)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 수행과정 또는 결과에 따라 업무 또는 제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업무 등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검토한 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도 개선과제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4.]

제15조(소송비용의 회수) 삭제 <2022. 5. 27.>

제16조(소송사건현황 관리 및 보고) 주관부서장은 매월 소송사건현황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연도의 소송사건현황을 다음 연도 초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 연도 말 또는 다음 연도 초에 기관 업무보고 계획에 따라 업무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17조(사례 관리)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자문 업무와 관련된 판례 등 제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교육·홍보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관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되 특정 변호사에게 위임 건수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4.14.>

[전문개정 2013. 9. 30]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임이사·지원·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문서번호 :		년 월 일	
경 유 :			
수 신 :	발 신 :		(인)
제 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범원	사 건 명	
	검찰		
원 고		피 고	
공익 법무관		사 건 구 분	공동·지휘
소송 수행자		전화·FA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input type="checkbox"/> 선고 <input type="checkbox"/> 속행
소 송 진 행 사 항			
구 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입 증 방 법	
원 고			
피 고			
재판부지시사항			
차회진행예정사항			
소송수행자의견			
첨 부	<input type="checkbox"/> 답변서 <input type="checkbox"/> 준비서면 <input type="checkbox"/> 증거목록 <input type="checkbox"/> 증인신문사항 <input type="checkbox"/> 증거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규격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

(앞면)

상소(제기·포기)의견서

사 건 번 호	검 찰		사 건 명	
	범 원			
원 고			피 고	
선 고 일 자		송달일자		불변기간
소송 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사항				

(뒷면)

국가 또는 행정청 주 장 사 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증거및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소(제기·포기) 이 유	

(규격 210mm×297mm)

청렴서약서

변호사 _____은 _____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소송대리인 선임기간 중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패 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수행 전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귀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